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택 관리사보	합격증번호	제 호(발급 시 · 도 :)
	취 득 일	년 월 일
실무 경력	①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	년 개월
	② 주택관리업무 종사 경력	년 개월
	③ 주택 관련 업무 종사 경력	년 개월
	④ 합산 경력	년 개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가. 재직·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2. 사진 1매 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3. 신청인 제출서류인 재직·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 주소,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 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②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③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④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리절차

